

[회의록]제200차 이사회 회의록 - 강원의료사협81차

1. 회의일시: 2024년 9월 4일(수) 오후 6시 30분
2. 회의장소: 무위당사람들 교육장(중앙로 83, 4층)
3. 회의참석: 이광희 이사장, 박준영 부이사장, 신승훈 전무이사, 염은경, 천혜란, 최효심, 김태성, 서연남 (이상 이사, 총 8명)
참관 : 공영훈
불참 : 이운승, 정연우, 김선기, 이창호, 김유미, 차윤정, 김은주(7명)
4. 성원보고
- 이광희 이사장(이하 의장)이 성원 15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제200차 정기 이사회의 개회를 오후 6시 30분에 선언하다.
5. 전차회의록
- 의장이 6월 17일(월) 제199차 이사회 전차회의록을 낭독하고 의견을 물은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승인하다.
6. 보고안건
- 의장이 의안을 순서대로 상정하고 별첨되어 있는 자료를 확인한 후 신승훈 전무이사에게 안건에 대해 설명해줄 것을 요청하다.
- 신승훈 전무이사가 논의안건을 보고하다.
7. 논의안건

제1호 의안 : 2024년 6월 ~ 8월 신규 가입 조합원의 가구원 이용 승인의 건

1. 제안 배경
- 협동조합기본법 및 정관에 따른 신규 가입 조합원 및 그 가족이 조합 보건-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조합 공급고 산정의 100분의 50범위를 유지함.
2. 제의관계조항
- 제4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- 제58조(사업의 이용)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조합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.

② 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.(6차 개정)

1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
2.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
3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
4.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(7차 개정)
5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
6.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
7.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·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·거소·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(7차 개정)
8.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
9.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·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7차 개정)

③ 조합의 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으로 한다. 이 경우 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·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공급고를 산정한다.

3. 제안 내용

- 6월 신규 조합원(19명, 26명(가구원)) : 김정희(김효영), 전경숙(채홍길), 김해연(최근태), 이채우, 오순덕(조규복), 김미정(김영주, 김민경, 정성철), 송하얀(이택건, 이다인, 이다예, 이다나), 추희순(김용규), 조성삼, 홍영옥(안현준, 안현주, 안현남), 권세라(임동진), 방정숙, 권상용, 이국희, 이애란(박정일, 박정빈, 박상민, 박나윤, 박건률), 이구은, 김재옥(김준노, 김민아, 김관우), 이은봉(이수행, 이건민), 장형욱
- 7월 신규 조합원(4명, 3명(가구원)) : 권상옥(이현희), 신금선, 강구영(강병천), 라경숙(임종득)
- 8월 신규 조합원(없음), 총 가구원 29명(23세대)
*총조합원수 1,660명(8월 31일 기준)

- 이상 조합원의 가족에 대한 조합 의료기관 이용을 승인 주문함.

-> 결정 사항 : 원안대로 승인하다.

- 추가 의견 -

□제2호 의안 : 제5기 임원 비전 워크숍 및 임직원 견학 진행의 건

1. 제안 배경

- ① 2024 원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“비전 워크숍 지원사업” 선정
 - 워크숍 참여대상 : 조합 이사 및 감사
 - 사업목적 : 신규 임원들의 역량 강화와 조합의 장기 비전 확립과 방향성 확보
 - 진행시기 : ~ 10월 31일 전까지 완료
 - 지원내용 : 워크숍 강사비 일부 지원
 - 1개 기업당 4시간*2회차(필수) 지원 ---> 워크숍 총 비용 90만원
= 지원금 62만원 + 자부담 28만원
- ② 임직원 견학 진행
 - 안성, 안산, 살림의료사협 中 선진지 견학 진행(임원 의견 수렴 후 확정)
 - 선진지 견학을 통한 의료사협의 이해도 향상, 향후 방향성 도모

2. 제의관계조항

- 제41조(이사회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- 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- 7.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

3. 제안 내용

- 임원 비전 워크숍 진행방안(일정 등) 확정
 - 한국주민운동교육원 강사와 일정 조율 및 확정 필요
 - 평일 중 4시간×2회 진행
(현 가능 일정)10월 17일(목), 18일(금), 19일(토), 24일(목), 25일(금), 26일(토)
 - 제5기 임원 필히 참석
- 임직원 견학 진행방안(일정 등) 확정
 - 선진지 확정 : 00의료사협
 - 견학 일정 확정 : 9월 4째주 ~ 10월 1째주 中 확정

-> 결정 사항 : 임원 비전 워크숍은 일정을 강사와 협의 후 확정, 임원 단톡방에 공지하고 최대한 참석하는 것으로 하다.

임직원 견학은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정하고 공영훈 원장님의 일정도 고려하여 일정 확정 후 진행토록 한다.

□제3호 의안 : 공생추진위원회 사업계획(안) 및 예산 승인의 건

1. 제안 배경

- 제199차 이사회(6월 17일) 제2호 의안 : (협동모델)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범사업 추진의 건 승인
- 공생추진위원회 구성 완료 -> 추진위원장 : 천혜란, 추진위원 : 박준영, 최효심
- 1차 회의 : 7월 30일, 2차 회의 : 8월 26일

2. 제의관계조항

- 제41조(이사회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4.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

3. 제안 내용

- 공생추진위원회 사업계획(안) 및 예산안 확정 *자료별첨

-> 결정 사항 : 원안대로 승인하다.

- 추가 의견 -

이광희 이사장 : 추진에 있어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진행토록 했으면 한다.

□제4호 의안 : 이사회 운영 규정 개정의 건

1. 제안 배경

- 24년도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“임원에 관한 사항” 에 있어 “주의” 를 받음.

○ 임원의 의무와 책임과 관한 사항

- 정관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정하고 있음
- 하지만 '21.4. ~ '24.3. 총 24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그 중 이사 이○호, 서○남은 연속 3회 불참, 최○심 연속 4회 이상 불참, 변○수 연속 5회 불참, 도○연 연속 6회 이상 불참, 안○혜 연속 10회 등으로 이사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.

- 조치할 사항으로 “이사회 연속 불참자에 대한 이사회 규정” 등 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적정한 운영 및 임원의 책임을 다하도록 조치 요청을 받음.

- 조합 이사회 운영 규정 中 발취

제8조 (불참통보)

① 이사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이사는 그 뜻을 개최일 전일까지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2회 이상 연속 불참 시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.

2. 제의관계조항

- 제41조(이사회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- 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3. 규정,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

3. 제안 내용

- 강원의료사협 규정 內 “이사회 운영 규정 개정” 승인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제8조 (불참통보) ② 2회 이상 연속 불참 시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.	제8조 (불참통보) ② 연속 3회 이상 불참시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이사회 의 동의를 얻지 못할 때에는 사임한 것으로 한다. ③ 해임의 경우 총회 안건으로 상정한다.	이사회 의 적정한 운영 및 임원 의 책임 강화
신 설	제15조 (수당지급) 이사회 에 참석하는 이사 및 감사 (비상임 에 한함) 에 대하여는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서면결의 에 의할 경우에는 참석수당 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	임원 의 역할 및 정당성 확보
제15조 ~ 제17조	제16조 ~ 제18조	조 변경

-> 결정 사항 : (개정안)② 연속 3회 이상 불참시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이사회 의 동의를 얻지 못할 때에는 사임한 것으로 한다. 로 문수 수정하여 승인하다.

- 추가 의견 -

□제5호 의안 : 강원의료사협 재가방문요양센터 센터장 채용의 건

1. 제안 배경

- (전)강원의료사협 길동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 기관번호가 3번이며, 3번 유형은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설치된 기관으로 법의 개정에 따라 2025년부터 갱신제를 통해 갱신해야 하는 시기가 오면 기관번호 3번은 사라질 예정이다.
- 이에 조합은 선제적으로 기관번호 2번으로 설치 신고를 실시 함, 명칭은 강원의료사협 재가방문요양센터로 변경함. (기관번호 2번은 노인복지법에 의거해 설치된 재가노인복지시설임.)

- 추진경과

- * 6월 17~20일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공단이관 신청서 작성 및 이관 자료 분류, 편철 작업
- * 6월 24~28일 신규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서류 작성
- * 6월 27일(목) 국민건강보험공단 폐업 담당자와 자료이관 점검(부이사장, 김지영 팀장)
- * 7월 1일(월)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일부 이관자료 제출, 접수증(폐업) 발급
- * 7월 3일(수) 원주시청 폐업 신고서 서류, 신규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자료 제출
- * 7월 17일(수) 원주시청 경로복지과 팀장, 담당 주무관 현지조사
- * 7월 24일(수) 원주시청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,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수리 알림(공문)
- * 7월 26일(금)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(재가방문요양센터 포함)
- * 7월 31일(수) 장기요양기관 길동무 폐업 신고 수리 알림(공문)
- * 8월 1일(목) 강원의료사협 재가방문요양센터 개업일(지정 유효기간 : 24.07.23.~30.07.22.)

- 강원의료사협 재가방문요양센터 현재 상황

- * 4~5년 전부터 15명의 대상자를 기준으로 소폭 증가와 유지, 감소 등 을 반복하며 유지해왔으나 더 이상 대상자 감소 후 회복하지 못하고 침체 되어 중대 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치달음.

1월 16명으로 시작하여 2월부터 8월 말 까지 14명의 대상자로 가산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7,064,440 (6월 말 기준)의 손실도 지속 중임.

대상자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조합원 적극 홍보, 요양보호사·임직원 독려 등 적극 대상자 발굴을 위한 조치를 하였으나 극복하지 못함.

시설장(이광희), 센터장(신옥경) 모두 내부직원이 겸직하는 상황 속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가산 사회복지사 1명이 중심을 잡기에는 책임자 부재로 한계에 직면함.

(기관번호 변경 후 내부직원 겸직 불가로 박준영 부이사장을 센터장으로 신고)

또한, 조합이 추구하는 의료중심의 통합돌봄에 있어 의료와 돌봄이 연계 협력되는

시너지를 만들어나갈 인력의 부재로 이를 만들어가기 위한 인력이 필요함.

- 이에 센터장 채용을 통해 재가방문요양센터의 경영 개선 및 통합돌봄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자 함.

2. 제의관계조항

- 제41조(이사회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3. 제안 내용

- 강원의료사협 재가방문요양센터 센터장 채용 진행
- 센터장 급여 및 조건, 경영 개선 전략 등 은 별도 TF 회의를 통해 결정

-> 결정 사항 : 센터장 신규 채용을 보류하고 내부 직원 (진단)회의 또는 외부 전문가 섭의를 통한 확대 (진단)회의를 통해 재가방문요양센터의 명확한 방향성과 경영계획을 수립한 후 다음 이사회 때 안건으로 재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하다.

- 추가 의견 -

□제6호 의안 : 기타 안건

- 추가 의견 -

최효심 이사 : 2024 대의원 소통의 날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청하다.

(차기 이사회 보고기로 하다.)

재가방문요양센터 대상자 확보와 관련하여 24년 1월 1일 ~ 7월 31일 까지 외래 환자, 방문간호, 방문진료 대상자의 질환 현황을 요청하다.

(차기 이사회 보고기로 하다.)

서 명

의장 이광희

이사 박준영

이사 김태성

이사 서연남

이사 염은경

이사 신승훈

이사 최효심

이사 천혜란